

「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1.23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11. 15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1. 15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6호)
- 다. 2004. 11. 23 :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 (지역경제과장 유재석)

가. 제안이유

- 관련법령의 개 · 폐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
⇒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
- 특별회계 설치 · 운영목적에 관리사업 추가
 - 관리사업 : 지원시설, 공공시설, 녹지시설 등의 관리
-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비
 -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⇒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-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비 : 농공지구 ⇒ 농공단지

다. 근거법령

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

3.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태)

- 동 조례 (안)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 · 폐 등으로 인하여 근거법령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
- 주요내용으로는
 -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,
 -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외에 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시설, 공공시설, 녹지시설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,
 - 근거 상위법령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 · 개정되어 근거 법령명칭의 변경과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용어를 정비하고,
 - 기타 조문을 근거법령의 내용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
-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, 상위법령과의 관계, 용어 및 조문의 정리,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